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기간제계약직 공개채용 공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해양전문 연구 기관으로 21세기 해양과학기술을 선도해 나갈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찾습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채용분야 ¹⁾	인원	학력	지원가능 전공
전문연구 요원	C01 신호·영상 처리 및 해양 활용 기술 개발	1명	석사학위 소지자 (최종학위 기준) ※ '석·박사 학위 통 합과정' 수료자 지원 가능	해양학 또는 컴퓨터공학 또는 전기전자 또는 IT 또는 응용물리 또는 원격탐사 또는 지리학 또는 공간정보공학
육아휴직 대체인력	E01 동해연구소 운영 지원	1명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 지원자격

가. 공통사항

- 1) 성별 제한 없음
- 2) 채용 결격사유²⁾에 해당하지 않는 자

[채용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의 신규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연구직)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자

- 3) 임용예정일 부터 전일제 정상근무가 가능한 자

나. 직종별 지원자격

1) (C01)전문연구요원

- 채용분야 전공 및 학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 대상자
 - ※ 현역입영 대상자
 - ※ 현전문연구요원으로 기 복무중인 자는 제외

1) 세부사항은 '(첨부1)채용분야 직무기술서' 참조

2) '(참고1) 채용 결격사유' 참조

- 「병역법」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에 의거하여 만 35세까지 전문연구요원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자
-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 대상³⁾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병무청 ‘산업지원 병역일터’ 홈페이지에서 “편입제한대상” 직접 확인
<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4>

2) (E01)육아휴직 대체인력

- 병역의무대상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 없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이고 ‘만 61세 이하’의 연령인 자

3 채용 시 우대제도(가점)

가. 채용가점⁴⁾

가산 유형	유형 정의	전형별 가산점	
		1차 전형(서류심사)	2차 전형(면접심사)
법령가점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또는 10%
특별가점	등록 장애인	-	만점의 10%

※ 1차 전형(서류심사) 에서 ‘서류 작성의 적격 여부’ 및 ‘전공적격 여부’만 심사하는 분야의 경우 1차 전형(서류심사)에 가점 사항을 적용하지 않음

나. 가점관련 안내사항

- 모든 우대제도(채용가점)는 관련법령 또는 해양과기원 내부 결정에 따라 부여
 - 모든 우대제도(채용가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혜택을 적용하며 추후 증빙서류를 통해 검증
 - 우대제도 적용 방법
 - 우대제도(채용가점)의 혜택을 통한 가점의 합은 최대 10점을 상한으로 인정
 - 우대제도(채용가점)의 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지원자에게 유리한 최상위 1가지만 인정
- ※ 법령가점(취업지원대상자) 대상자의 경우 가점상한(10점) 이내에서 가점요소 1가지 추가하여 적용 가능
- 우대제도(채용가점)의 혜택 적용 시 전형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내 적용
- ※ ‘법령가점 및 특별가점’ 적용 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국가유공자 등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을 준용하여 채용가점 운영

4 근무조건 및 근무지

가. (C01)전문연구요원

- 고용형태: 기간제계약직
- 계약기간: 계약일(2020년12월24일(목) 예정) 로부터 전문연구요원 복무만료일까지(최대 3년)

※ 최초 1년 계약,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3) 「병역법」 제38조의2(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등의 제한)에 의거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편입 불가
 4) ‘(참고2) 채용가점 근거’ 참고

- 3) 근무지: 부산 본원(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85)
- 4) 연봉 및 처우: 해양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연봉 및 처우 적용

나. (E01)육아휴직 대체인력

- 1) 고용형태: 기간제계약직
- 2) 계약기간: 계약일(2021년2월15일(월) 예정) 로부터 2022년5월15일 까지
 ※ 최초 1년 계약, 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연장 가능

[육아휴직 대체인력 계약]

- 육아휴직 직원의 조기출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시작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육아휴직 직원이 조기 복귀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 사항은 내부 규정에 따름

- 3) 근무지: 동해연구소(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48)
- 4) 연봉 및 처우: 해양과기원 내부규정에 따라 연봉 및 처우 적용

5 전형절차 및 일정

가. 전형절차

구분	평가기준	선발
1차전형 (서류심사)	○ 평가항목 - 지원서 적격성 (지원자격, 지원서 필수사항 작성 여부, 작성 충실도) - 전공 적격성	적격자 전원
2차전형 (면접심사)	○ 평가항목 - 인성, 조직적합도 등 평가 - '업무(연구 등) 관련 지식, 업무(연구 등) 경력/경험 등'을 활용한 업무(연구 등) 역량 평가	채용분야별 1배수

나. 일정⁵⁾

구분	내용	일정
채용공고	공고기간	'20.11.2.(월)-16.(월)
	입사지원서 접수기간	'20.11.4.(수)-16.(월) 16:00까지
1차 전형	서류심사	'20.11.17.(화)-20.(금)
	합격자 발표	'20.11.25.(수)
2차 전형	면접심사	'20.12.3.(목)-4.(금)
	합격자 발표	'20.12.9.(수)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		'20.12.10.(목)-16.(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12.21.(월)

1) 입사지원서 접수

-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er.co.kr/>)에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
- 방문·우편·이메일·FAX 접수 불가

5) 전형일정은 기관 사정 및 지원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추후 채용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 예정

- ※ 온라인 접수 마감시간에는 지원자 집중으로 시스템 접속이 지연되어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시간여유를 두고 지원 필요
-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시간('20.11.16.(월) 16:00) 이후에는 수정 및 지원 불가

6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지원 시	① 채용사이트 kiost.recruiter.co.kr 온라인 양식 작성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② (전문연구요원의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양식1)학위논문주요내용 - (양식2)연구실적 목록 - (양식3)직무수행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 양식의 변경은 불가하며, 실적 추가를 위한 행 추가만 가능 ○ 작성하는 내용에 개인의 인적사항이 직접적으로 유추 가능한 정보는 작성 금지 ※ (참고3)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준수 ○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이후 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은 불가함
2차 전형 시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제출 방법 안내)	① 본인확인 용: 본인 증명사진 ② 신원조사 용: 신원진술서, 개인정보동의서, 기본증명서 ③ 자격증빙 용: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 ④ 가점증빙 용: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⑤ 경력산정 용: 학위증명서·성적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서류는 2차전형 합격자에 한해 임용 시 필요한 검증 용도로만 활용됨 ○ 2차전형 시 전형위원회에 제공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반환 가능
최종합격자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진 ④ 차량등록증·급여통장 사본	

가. 유의사항

- 1)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한 연구실적만 인정
- 2) 증빙 서류 첨부 시 유의사항

- 공식적으로 발급받은 서류의 사본 스캔파일만 인정되며, 인터넷 조회 화면을 캡처한 파일,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촬영한 파일은 인정되지 않음
- 제출서류 파일은 컴퓨터 화면에서 발급날짜 등 모든 내용이 식별 가능하도록 해상도를 설정하여 스캔하여 주시기 바라며,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 서류 미제출로 간주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해양과기원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증빙서류 수집 시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증빙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는 해양과기원에서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블라인드 처리(수정테이프 등으로 가림 처리) 후 스캔/첨부할 것
- ※ 예시) **3456-*****

- 3) 제출 서류 이외에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사실여부를 조회하며,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 안내

- 가. 최초 입사지원서 작성 시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사진, 출신학교' 7개 항목의 기재란 없음
또한,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처리 기준⁶⁾에 따라 개인 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은 일체 기재 금지
- 나. '블라인드 채용 유의사항'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에 기재를 금지한 정보 입력 시 불합격 처리 등의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채용과 관련한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단, 입사지원시스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제외)에 입력하는 인적사항, 각종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인적사항의 경우 채용담당부서에서 지원자 본인 확인을 위해 취급하는 정보로 '블라인드 채용금지사항 위반'과 무관
- 다.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개인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 및 기타 개인관련 정보(가점사항 등)는 공개채용 전형 진행 과정에서 블라인드 처리됨

8 이의신청, 전형불합리 신고, 채용서류의 반환 안내

가. 이의신청 안내

- 1) 대상: 채용 전형 불합격에 대한 이의 사항
- 2) 기간: 각 전형 합격자 발표일 부터 5일 간(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3) 방법: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er.co.kr>)-공지사항'에 접수 방법 확인
- 4) 이의신청 처리: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후 개별 답변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나. 전형 불합리 신고 안내

- 1) 대상: 2차 전형(면접심사) 진행 중 발생한 불합리 행위(성차별 등)
- 2) 기간: 2차 전형(면접심사) 합격자 발표일 부터 접수(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3) 방법: 해양과기원 홈페이지-부조리신고 (http://www.kiost.ac.kr/kor/sub03_03.do)

다. 채용서류의 반환⁷⁾ 안내

6) 블라인드 처리 상세 기준은 '참고3)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검토 기준' 참조
7)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1) 대상: 2차 전형(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서류(원본) 일체, 입사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2) 기간: 추후 접수기간 안내 예정
 - 3) 방법: 채용사이트(<https://kiost.recruiter.co.kr>) 공지사항 내 신청 방법 확인
- ※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9 기타 사항

- 가. 채용분야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채용과 관련된 사항(합격자 공고, 제출서류 안내 등)과 채용공고 변경 사항 발생 시 해양과기원 채용홈페이지(<https://kiost.recruiter.co.kr/>)를 통해 공지함
- 나.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채용가점) 유효여부 등과 관련된 사항은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작성 시 비속어 사용, 의미 없는 단어반복, 타인의 작성내용과 동일한 경우, 불성실 작성(최소 분량 "70자" 미준수⁸⁾) 등은 불합격 처리함
- 라. 입사지원서는 접수마감 시간("20.11.16.(월) 16:00)까지 모든 작성을 종료하고, 정상적으로 수험번호(접수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만 인정
- 마. 입사지원서 작성 시 기재착오, 누락 또는 실수 등으로 인한 불이익(불합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바. 입사지원서 허위작성(지원자격, 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증빙서류 등) 위변조, 필수 제출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해당 전형 절차를 정지, 무효 및 불합격 처리하고, 향후 5년간 해양과기원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음
- 사. 1차 전형(서류심사)는 지원자가 입력한 내용(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능력소개서, 증빙 서류 등)만으로 심사를 진행함
- 아. 대면 전형 시 본인의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한정)을 지참해야 하며, 학생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는 응시할 수 없음
 -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
 - ※ 수험표 출력은 각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출력 가능
- 자.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채용예정인원 미만으로 선발할 수 있음
- 차.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정청탁으로 인해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해양과기원 내부 규정에 따라 당해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카.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⁹⁾ 결과 부적격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8) 최소분량 70자 미준수, 최소분량 산정 시 문자 및 특수문자 만 인정함

9)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불합격 판정기준) 준용

타. 채용 확정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입사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양과학기술원에서 지정한 임용예정일에 특별한 사유 없이 입사를 지체하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파. 예비합격자는 추가 임용사유 발생 시 결원인력 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충원 우선순위(2차 전형(면접심사) 결과 상위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예비합격자 명단은 2차 전형(면접심사) 합격자 발표 시 별도 공지 예정이며 예비합격의 효력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지정된 기한(C01: '20.12.24.(목), E01: '21.2.20.(토)) 까지 유효하고, 차기 신규채용에는 영향 없음

[추가 임용사유]

- 2차 전형(면접심사) 합격자의 신원조사·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또는 제출서류 검증 부적격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최종합격자 미입사에 따른 결원 발생의 경우
- 부정채용 등에 의해 결원 발생으로 합격되지 못한 피해자 구제의 경우

하. 외국국적자는 입사지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해당국가 신원조회 기관에서 발급한 신원조회서, 그리고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증빙할 사증(visa) 제출 필요

10 문의처

가. 홈페이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용 홈페이지(<https://kiost.recruiter.co.kr/>) '채용 Q&A'

나. e-mail: recruiter@kiost.ac.kr

다. 전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실 채용담당 051-664-9072

2020년 11월 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 가.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 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 다.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 라.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

관단체

- 사.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 아.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 ④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 3. 군복무 및 사회복지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각종 관허업(官許業)의 특허·허가·인가·면허·등록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특허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이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하여야 한다.
- ③ 병무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관허업(官許業)의 특허 등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사업자등록증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다.
-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을 제2항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⑤ 제7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40세까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8.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 ③ 제2항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여 참여제한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와 그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 환수 절차를 계속할 수 있다.
-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⑧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4.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5.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참고2

채용가점 근거

○ 법령가점

구 분	가 점	근 거
법령가점	만점의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가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 특별가점

구 분	가 점 ¹⁰⁾	근 거
등록 장애인	만점의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10)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해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해양과기원에서 자체적으로 가점 부여 결정

참고3

입사지원서 내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 검토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 기준」에 따라 편견 없는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입사지원서 작성 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사항을 숙지하시어 전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 블라인드 처리 기준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에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인적사항(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출신학교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 해양과기원에서 입력란을 지정한 경우 해당 입력란에 입력하는 개인인적사항만 블라인드 처리 기준에서 제외

단, 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등에 같은 개인정보를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 개인인적사항의 직접적 유추할 수 없도록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시)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 ○○연구소에서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였습니다.

○ 블라인드 처리 위반(직접적 유추 가능) 사항 안내

항목	기준 및 위반 예시
성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입사지원서 성명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 전 항목에 이름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출신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 영도에서 태어나 줄곧 부산에서 자라왔으며 ~
가족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가족관계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버지께서 KIOST(또는 서울대학교)에서 재직(또는 퇴직)하시고 ~ - 저희 가족 모두 공학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 ~
생년월일 및 연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입사지원서 생년월일 기재란 외에 전형 시 심사위원에게 공개되는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및 직무능력소개서 포함) 전 항목에 생년월일 또는 연령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태어나 ~
성 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성별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복무를 현역(운전병, 군수병, 의무병, 전경, 의경 등)으로 입대하여 ~ ⇒ 군대 의무 복무(병사, 전경, 의경)는 남성만 가능하므로 성별 직접적 유추 가능 - 결혼 후 아내(남편)과 함께 생활하며 ~ - 육아휴직을 통해 자식에 대한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시 알게 되었으며 ~ - 조직 생활 중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형(누나, 언니)인 제가 ~ - ○○여대를 졸업하고 ~ -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센터에서 지원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
출신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 출신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합격 처리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 졸업논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에 주어지는 서울대학교총장상을 수상하였으며 ~ - SNU○○○ 교대 동아리 ⇒ 동아리 등 활동 단체 이름 앞 이니셜을 통해 학교를 직접적으로 유추 가능

※ '경력 및 경험 사항'과 관련된 직장명 등은 기재 가능. 단, 학교 근무 경력 기술 시 블라인드 사항의 직접적인 유추 여부를 고려하여 작성할 것